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510
----------	-----

제출년월일 : 99. 10.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폐지이유

- 가스관계법령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법률 제582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법률 제5829호),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5823호)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금액이 상 위법에 최고금액이하로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부과기준이 없으므로 시 조례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로 구분하여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던 것을
-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징감 하여 부과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이 위 상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파주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1996. 3. 1 조례 제114호]

개정 1998. 7.20 조례 제218호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와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균형과 공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과대상자) 과태료의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
2.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적용을 받는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적용을 받는자

제 3 조 (처분) ①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 부과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위반행위가 2개이상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부과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합산한 부과 기준을 상한선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부과한다.

③시장이 처분을 행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과 처분 내용을 피처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조 (첨문) (98. 7. 20 삭제)

제 5 조 (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시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자는 처분 통지서 발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 6 조(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준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1. 안전관리규정				
가. 사업개시 또는 사용신고시 안전관리규정을 허가(등록)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때	고법 제11조제1항 액법 제10조제1항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11조제4항 액법 제10조제4항	100 100	200 200	300 300
다. 가스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제5항 액법 제10조제5항	50 50	100 100	200 200
라. 제조공정 및 자체검사 방법등을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고법 제11조제3항 액법 제10조제3항	100 100	200 200	300 300
2.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그 직무를 대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5조제3항 액법 제14조제3항	100 100	200 200	300 300
3. 보험가입		60일미만	60일이상 180일미만	180일이상
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5조제1항 액법 제33조제1항	100 100	200 200	300 300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4. 자체검사				
가스시설 및 용품,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1조제1, 2항 액법 제11조제1, 2항	50 50	100 100	200 200
5. 시공의 자체검사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공관리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자체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액법 제16조제1항 도법 제13조	50 100	100 200	200 300
6. 공급자의 의무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고법 제10조제3항 액법 제9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나. 가스 수요자에게 부적합시설의 개선을 명한경우 부적합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0조제4항 액법 제9조제4항	30 30	60 60	100 100
7. 시설, 용기의 안전유지				
가. 가스용기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의거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13조제4항 액법 제12조제4항	50 100	100 200	200 300
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때	고법 제13조제3항 액법 제12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8. 사용신고 등				
가. 가스사용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3항 액법 제29조제3항	50 50	100 100	200 200
나. 가스사용신고 대상자는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사용전에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아니하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아니한 때	고법 제20조제4항 액법 제29조제4항	50 50	100 100	200 200
9. 허가관청 등의 조치	고법 제24조	50	100	200
위해방지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	액법 제32조	50	100	200
10. 보고, 검사 등				
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에 위반한 때	고법 제26조제1항 액법 제35조제1항	50 50	100 100	200 200
11. 가스공급의무				
가스공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가스의 공급을 거절한 때	액법 제25조	100	200	300
12.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임시합격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합격으로된 시설은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때	액법 제19조제2항 도법 제16조제2항	50 100	100 100	200 300
13. 판매의 제한				
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공	액법 제24조제3항	50	100	200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급방법에 어긋날 때 나. 도지사 또는 시장이 정하는 지 역 또는 건물안에서 용기에 의 한 가스를 공급한 때	액법 제24조제4항	50	100	200
14. 시공기록 등의 보존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 원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나 이 를 위반하였을 경우	액법 제17조	50	100	200
15.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도 시가스사업자가 공급규정의 승인 을 얻거나 변경한때 영업소, 사무 소의 보기 쉬운곳에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 을 경우	액법 제28조 도법 제22조	50 100	100 200	200 300
16. 가스사용시설의 위해예방조치 등 가. 가스수요자가 시설을 개선하지 않았는데도 가스를 계속하여 공 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 하지 않 았을 때	도법 제28조제2항	100	200	300
나. 가스수요자가 그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 니한 때	도법 제28조제3항	100	200	300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17. 표준공사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 시설과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고시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때	액법 제15조의3제2항	100	200	300
18. 자체안전교육				
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고법 제23조의2제1, 3항 고법 제31조의2제1, 3항	100 100	200 200	300 300
나. 자체안전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명령을 위반한 때	고법 제23조의2제2항 액법 제31조의2제2항	100 100	200 200	300 300
19. 사고의 통보				
사업자 또는 사용신고자가 가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통보받은 공사가 이를 행정관청에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때	고법 제26조의2제1항 액법 제35조의2제1항	50 50	100 100	200 200
20. 신고한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신고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	고법 제4조제2항	100	200	300
21. 안전성평가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명한 경우 이를 위반한 때	고법 제13조의제2항 도법 제27조의제2항	100 150	200 300	300 500

구 분		처 분 내 용(만원)		
위 반 내 용	관 련 법 규	1 회	2 회	3 회
22. 검사 등				
고압가스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는	고법 제16조제3항	100	200	300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시가스사업	도법 제42조제1항	150	300	500
자 및 시공자의 사무실 기타 영업				
장에 출입하여 검사하는 경우 이				
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3.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가 한	고법 제28조의2	100	200	300
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				
24. 시설공사계획의 승인등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도법 제11조제2항	150	300	500
변경공사중 시·도시사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때				